

정관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 정관

제정 2019년 03월 13일

개정 2020년 03월 18일

개정 2022년 03월 30일

개정 2023년 03월 30일

개정 2024년 03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 4 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포도 수출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 공급
5. 농산물의 매취 및 비축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업 및 무역업
8.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5 조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6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7 조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로 한다.

제 8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 9 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①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회원사의 출자비율은 생산자는 총 출자액의 60%, 수출자는 40%으로 한다.

제 10 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 11 조 (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및 100주권 의 3종으로 한다.

제 11-1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제휴회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한국포도수출연합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권의 명의개서)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 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正本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 호에 준한다.

제 15 조 (주주의 신고 등) 주주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 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3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 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주식의 분할. 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3. 정관의 변경. 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4. 수권자본의 증가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6.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7.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등) 승인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9. 기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사항

제 22 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해당 법인, 농협 또는 회사의 소속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5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명 내외의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 4 장 이사와 감사

제 26 조 (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인 이상 9인 이하, 사외이사 1인,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제 28 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한다.

제 29 조 (임기)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 조 (보선) 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사의 선거직 대표로서 본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회원사의 대표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직하고, 후임의 회원사 대표가 임원이 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1 조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 32 조 (감사의 직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33 조 (이사회) ① 본 회사의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대표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는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운영사업’의 사업관리감독기관인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통합조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4 조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제18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6. 주요 사규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8. 수권자본 증가(안)의 설정
9.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
11. 기타 본 회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6 조(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6 장 회 계 및 계 산

제 38 조 (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결산한다.

제 39 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0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 41 조 (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 2. 파산
-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4. 주주총회의 결의

제 42 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43 조 (회사계속)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44 조 (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 45 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여 통지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주주총회의 승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하다.

제 8 장 청산 및 기타사항

제 46 조 (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 재산의 처분은 법률 규정과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 47 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48 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단, 상법 제344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50 조 (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관 인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정관 작성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03월 13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구상호 : 주식회사 한국포도수출연합)의 정관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03월 13일

부 칙

제 1 조 (‘농업인’ 과 ‘비농업인’) 이 정관에서 지칭하는 ‘농업인’ 은 ‘포도 생산자단체’ 를, ‘비농업인’ 은 ‘포도 수출업체’ 를 의미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 개정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08년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의 정관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019년 08년 27일

부 칙

2020년 03년 18일 주주 서면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의 정관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020년 03년 18일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의 정관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024년 03월 28일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

